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9 선고 2020나138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박희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535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C이 2016. 10. 21. 주식회사 H,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1) 와 사이에 체결한 합의 중 제4항 비용정산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433,335,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2016. 10.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2016. 10. 21. 피고에 대하여 한 대여금채권 면제 및 2016. 10.경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각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 등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C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이었고, 2016. 9. 9.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0. 고양시로부터 I시설 내 숙박시설 부지를 15,263,431,77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은 2015. 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J로부터 100억 원, K(J와 K를 통틀어 이하 ‘L’라고 한다)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상환일 2015. 9.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 F 등은 H의 L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 F은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을 L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H은 위 각 차용금 합계 150억 원을 피고에게 이체해주었고, 피고는 그중 13,737,087,770원을 고양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C은 원고의 업무대행을 한 주식회사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임무에 반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 또는 매매대금을 과다책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266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20. 4. 14.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8, 2019고합34(병합),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298, 대법원 2020도5351].

마. H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5. 7. 1. J에 4,370,849,310원을 지급하여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이 남았고, K에 같은 날 2,185,424,650원과 2016. 7. 7. 1,311,945,200원 각각 지급하여 2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이 남았다. 그러나 남은 차용금 상환이 지체되자 C 등, L와 H은 2016. 10. 21. 별지와 같이 C 등이 L에 담보로 제공한 피고의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되 C 등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에 따른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바.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비용정산합의(주문 제2항의 비용정산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라고 한다)에 따라 C은 2016. 10. 21.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34억 6,2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사. 위 I시설 내 숙박시설 부지 위에 신축하려던 호텔의 착공이 지연되자 고양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고양시는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금6995호로 15,316,664,6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C은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266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298호 판결(갑 제21호증의 1) 중 ‘다. 사업부지(4필지) 매입 후 고가 매도 관련’ 배임행위(판결문 20쪽)의 종료일은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전인 2016. 1. 15.인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C 등의 이득은 약 22억 8,900만 원에 이르고, “3. 피고인 C,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설계용역계약’ 체결 관련)”의 배임행위(판결문 22쪽)의 종료일도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전인 2015. 8. 28.인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C의 이득액은 30억 원에 이르며, 그 외에도 다수의 C의 배임행위가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이미 C의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진행 중이던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C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적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제1심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년 이후 C의 체납액이 542,777,170원에 이르는 점, ② C은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L에 앞서 본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적어도 8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C의 차량 및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한 결과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C에게 별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 C은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피고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액면가 합계액이 위 채무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은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채무자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피고의 악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1)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돈을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의 용도는 피고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차입금 변제 등 피고의 채무일 뿐 C의 채무가 아니다.

그런데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는 L는 이 사건 합의 전 피고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취득하였는데, C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거나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가 감소하여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C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L가 확보한 담보 또는 L가 취득하게 된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L를 제외한 원고 등 C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돈으로부터 전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특정 채권자인 L만 위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8. 12. 30. 기소된 이후 이를 알게 된 점, ②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C이 기소된 2018. 12. 30. 이후 비로소 구체화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손해도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서 발생한 점, ③ C은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약 21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를 사해행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의 범죄행위는 고의로 저지른 배임행위이고, 그 수법도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 등을 부풀리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C은 범죄행위 당시 이미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C이 배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날 바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손해가 구체화될 수 있고, 대부분의 배임행위는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전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던 점, ③ 피고는 C에 대한 기소전 추정보전청구(창원지방법원 2018초기775)의 추정보전액이 약 21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C에게 약 215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추정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은 S과

피고의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수익채권 등일 뿐 C의 책임재산은 아니고, 위 약 215억 원은 추정보전액일뿐 그 금액이 추정보전대상 재산의 가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C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C은 이 사건 합의 제6항에 따라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L에 부담하던 87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C의 전체적인 책임재산이 증가하게 되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특정 채권자인 L를 위하여 L의 담보인 피고 주식 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L가 이처럼 가치가 증가된 피고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돈의 가치가 L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C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채권자인 L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돈의 액수가 C의 L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는 ①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던 점, ② 앞서 주장한 것처럼 C의 L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됨으로써 C의 전체적인 책임재산이 증가하게 된 점, ③ C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C은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상실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하게 된 점, ④ 피고의 채권자들과 다른 연대보증인들도 이 사건 합의에 모두 참여한 점 등을 들면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그런데 ① C은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었고,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C이 운영하는 회사이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돈보다 큰 금액인 L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C이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들 등도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궁극적으로 L에만 이익을 주고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를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으로 한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이 피고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33,335,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33,335,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정산합의를 취소하며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박규도, 판사 김윤석

별지

합의서

“갑” : J(주)

“을” : K(주)

“병” : ㈜H

“정” : C, F, N

상기 “갑”과 “을”, “병” 및 “정”은 I 호텔(R) 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2015. 2. 10.)에 의거하여 주채무자인 “병”의 대여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갑”과 “을”이 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정”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주식양도

- ① “정”은 피고의 주식 전부(C 4,400주, F 4,500주)를 아래와 같이 “갑” 및 “을”에게 양도한다.

가. C이 소유한 피고 주식 4,400주 중

- “갑”(J(주))에 2,933주 양도
- “을”(K(주))에 1,467주 양도

나. F이 소유한 피고 주식 4,500주 중

- “갑”(J(주))에 3,000주 양도
- “을”(K(주))에 1,500주 양도

- ② “정”은 I 호텔의 사업 지연 및 손실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의 경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갑”과 “을” 및 “병”에게 I 사업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2. 경영권이동(변동)

“정”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갑”과 “을” 및 “병”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이사 3명을 선임한 후 피고의 경영에서 일괄 자진 사퇴하며, “정”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전부를

“갑”과 “을”에게 양도한다. 이후 I 호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갑”과 “을”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4. 비용정산

“정”이 2014년 12월 1일 ㈜G을 인수한 시점부터 “갑”과 “을”에게 피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피고의 임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미지급비용 및 차입금은 “정”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하며 주식 양도 이후 “갑”과 “을” 및 “병”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첨부8, ‘피고 미지급 비용 및 차입금 참조’]

6. 채무면책

‘I 호텔(R) 부지 매매계약서(2014.12.10.)’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 양도양수 이후 상기 금전소비대차계약 상의 연대보증인(C, F, M)의 연대보증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

2016년 10월 21일

[첨부8] 피고 미지급 비용 및 차입금

구분			소요예상비용(원)	비고
미지급비용	임직원	급여	미정	추후확인필요
		퇴직금	미정	
		상여금	미정	
	㈜W	투자유치자문	미정	
	X	전략고문	미정	
	소계		0	
차입금	Y(주)B		861,295,801	
	Z		100,000,000	
	AA		5,883,860	
	㈜M		1,716,000,000	
	㈜AB		110,000,000	
	소계		2,793,179,661	
	합계		2,793,179,661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C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10. 21.자 합의 중 4.비용정산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하지만 위 합의는 C 등이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할 때에는 처음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한다),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고, 피고는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위 합의 제4항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수익자이다(위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이상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예를 들어 권리의 포기나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 C이 한 위 합의 제4항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위 합의의 당사자를 선택한다.